

##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
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다음

1. 주주확정 기준일: 2018년 11월 27일
2. 주주명부 폐쇄기간: 2018년 11월 28일~2018년 12월 [4]일

일자: 2018년 11월 12일

주식회사 에이블씨앤씨  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, 13층  
(서초동, 마제스타시티 타워원)  
대표집행임원 이 해 준

명의개서대리인: 주식회사 하나은행  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
대표이사 함 영 주